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등 >

■ 최민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582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	3
2.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9
3. 자료 제출 요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13
4. 아웃링크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및 기사의 제공·매개 거부 근거 신설	17
※ 참고자료	
1. 타 부처 및 협·단체 의견	25
2. 유사 입법례	28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최민희의원 등 15인

나. 제 출 일 : 2025. 9. 1.

다. 회부연월일 : 2025. 9.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편향적인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자극적 제목 사용 등으로 인해 뉴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사 열람 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며, 포털을 통한 기사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뉴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포털을 통한 댓글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 함. 아울러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도 등록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함(안 제9조제7호 및 제9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안 제9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추가 등록 사항 및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관청 규정 신설(안 제9조제1항 및 제6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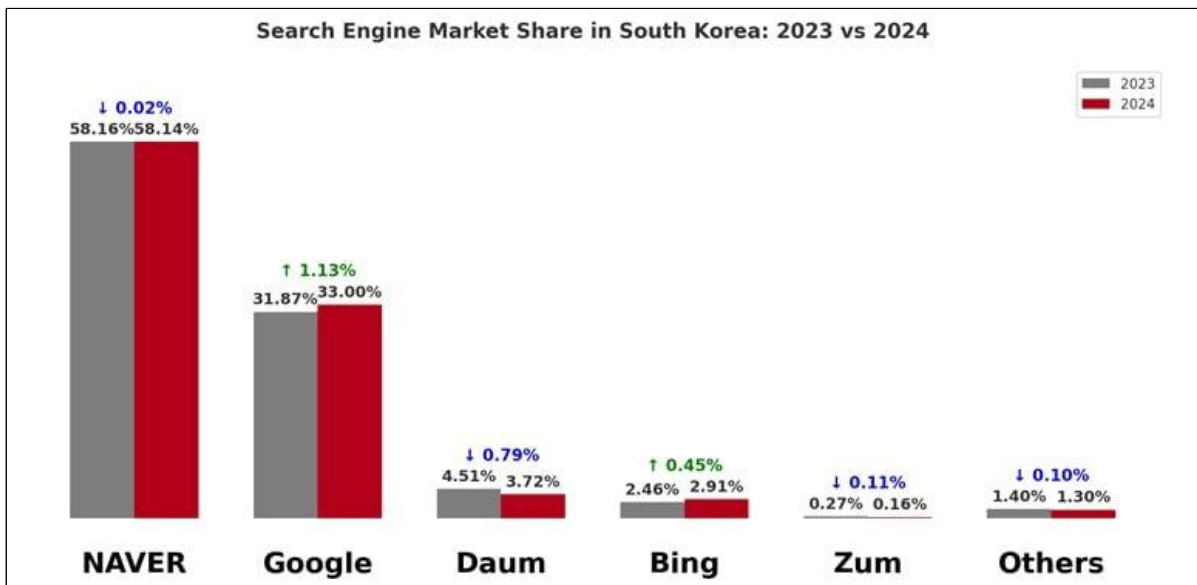
[illegible]

현행	개정안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u><신설></u>	7. <u>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주된 업무담당자 또는 국내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u>
7. (생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u><신설></u>	9. <u>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u>

현행	개정안
<u>8. ~ 11.</u> (생략) ② ~ ⑤ (생략) <u><신설></u>	<u>10. ~ 13.</u>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가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이하 “<u>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u>”라 한다)인 경우는 국내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나 업무담당자의 주소 또는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으면 <u>제9조의3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u>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 검토사항

- 현행제도에서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의 등록관청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도 관련 규정이 미비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현행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 2023~2024년 기준 검색포털 점유율은 네이버가 약 58%, 구글이 약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도 대비 구글의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임¹⁾.



- 실제 뉴스 유입에서는 포털 내 기능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므로 포털 점유율을 뉴스검색만을 위해 해당 포털을 이용하

1) Search Engine Market Share in Korea 2025, 2025 5. 20
https://www.interad.com/en/insights/korean-search-engine-market-share?utm_source=chatgpt.com

는 비율로 바로 해석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포털을 이용한 뉴스 유입의 상한선을 추정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어 보임.

- 구글 등 해외 포털의 점유율이 높게 측정되고 해당 포털사이트들이 인터넷뉴스를 제공 또는 매개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해외사업자를 신문법상 등록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에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신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 등 등록사항을 정비하는 것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언론중재위원회는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정 및 소송절차에서 문서송달 등을 원활하게 하고 해당 사업자의 기사 제공·매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을 국내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의무조항보다는 ‘등록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경향신문은 해외사업자에게도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부과되는 공통된 의무를 적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실효성 여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등록을 의무화하더라도 글로벌 본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효적 제재 수단이 부족해, 국내 사업자만 과도한 규제 부담을 떠안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안 제9조의3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규정 신설(안 제9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9조의3(국내대리인의 지정 등)</u> ① <u>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u> 1. <u>제9조에 따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u> 2. <u>제9조의4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u> 3. <u>그 밖에 이 법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부여된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의 이행</u>

현행	개정안
	② <u>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u> ③ <u>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u> 1. <u>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u> 2. <u>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사무소·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u> ④ <u>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u>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현행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해외인터넷뉴스사업자를 등록하더라도 국내 업무를 대리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 사무소 혹은 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관련 법령상 부여된 의무 및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다만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유사입법례의 경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자에게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만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아울러 개정안에 국내대리인 미지정에 대한 제재조치가 없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사 입법례를 고려해 국내대리인 미지정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국내대리인의 지정 의무를 신설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해외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지정의무자의 범위 등에 대한 보완 검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와 달리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모든 해외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정의무자의 범위 등에 대한 보완 검토 필요함.
- 유사 입법례는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한미FTA의 현지주재의무 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현행 신문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해외사업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자료 제출 요청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안 제9조의4 및 제39조제2항1의2 신설)

가. 개정안 요지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자료 제출 의무 및 동 의무 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부과 근거 마련(안 제9조의4 및 제39조제2항1의2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9조의4(자료의 제출 등) 시·도</u> <u>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터넷</u> <u>뉴스서비스사업자(국내대리인</u> <u>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u> <u>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을</u> <u>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u> <u>을 받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u> <u>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u> <u>요청에 따라야 한다.</u> <u>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u> <u>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u> <u>된 경우</u> <u>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u> <u>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u>

현행	개정안
제39조(과태료) ① (생략)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3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1. (생략)	② ----- ----- ----- ---
<신설>	1. (현행과 같음)
2. ~ 9. (생략)	1의2. 제9조의4를 위반하여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 규정에서 여론집중도 조사 및 일반일간신문 사업자 대상 대기업 소유제한 사실 확인 등 다른 상황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 위반사항 발견 또는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법 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민원을 접수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 위반사항 확인 등 필요할 경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국내대리인 포함)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안 제9조의4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므로 법 제10조에 연계하여 제10조의2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 법 제2조제12호에서 신문 등을 공급받고 이용하는 자로서 ‘독자’를 규정하므로, 안 제9조의4제3호의 ‘이용자’를 ‘독자’로 수정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개정안에 국내대리인 미지정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2천만원 이하)를 신설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신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이는 자의적 법 집행으로 악용되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자료 제출 요구 관련 조항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행정조사 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아웃링크 등 기술적 조치 의무 및 기사의 제공·매개 거부 근거 신설(안 제10조)

가. 개정안 요지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아웃링크 도입 등 기술적 조치 의무 신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제공·매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 신설(안 제10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생략) <u><신설></u>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u>②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중 매출액, 이용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기사를 제공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방송, 잡지 등(이하 이 조에서 “언론”이라 한다)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술적 조치</u> <u>2. 독자가 기사를 검색하거나 열람할 때 특정 언론을 추가</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하거나 제외하는 등 독자 개인별 기사배열이 적용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u> 3. <u>독자가 기사를 제공하는 언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u> ③ <u>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내부기준에 해당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그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할 수 있다.</u> 1. <u>기사 제목 또는 본문에 욕설, 비속어 등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기사</u> 2. <u>다른 언론의 기사를 무단 복제·전재한 기사</u> 3. <u>기사 형식을 가장하여 광고·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u> 4. <u>열람 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악성프로그램이 전달되거나 유포될 가능성이 있</u>

현행	개정안
<u><신설></u>	<u>는 기사</u> ④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한 내역과 제3항에 따라 마련한 내부 기준 및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한 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⑤ ~ ⑦ (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2. ~ 9. (생략)	2. ~ 9.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사항

- 현행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방식, 기술적 조치 및 기사의 제공·매개 거부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아, 독자의 기사 선택권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언론이 직접 선정·배열한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도록 하고, 독자별 기사배열이 적용되도록하며, 기사제공 언론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열람하도록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여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아웃링크 제도 도입으로 포털

을 통한 기사 제공의 투명성을 제고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제공·매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사의 품질과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독자 보호를 강화해 건전한 여론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써 그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다만 아웃링크를 통해서만 기사를 제공·매개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언론사의 서버 관리 부담을 증가시켜 중소언론사 경영의 위협요인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 제공·매개 방식을 아웃링크로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과 헌법 제15조 직업의 자유에서 내포하고 있는 영업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히 검토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국내 포털 아웃링크 사례로, 네이버에서 2010년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웹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뉴스캐스트’ 서비스를 제공했으나, 언론사 간 과도한 경쟁으로 선정적 보도가 많아 포털 이용자의 항의·민원 다수 발생하여, 2013년 ‘뉴스스탠드’로 개편하여 언론사 홈페이지 아이콘을 보여주고 독자가 해당 언론사를 클릭하면 바로 언론사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방식으로 변경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개정안에 따른 기술적 조치로 언론사 서버 관리부담이 증가해 중소언론사 경영의 위협요인이 증대하고, 대형 언론사 중심 구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로딩속도 저하, 과다 광고 노출 등 독자의 이용편의성과 뉴스의 다양성이 저하될 것이 예상 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기술적 조치 의무 부과(규제)에 따른 효과

규제내용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측면	언론사 측면	독자 측면
아웃링크 방식 제한	· 기사 품질 관리 책임 및 뉴스저작권 논란 감소 · 이용자 체류시간 · 광고 수익 감소	· 방문자 수 · 광고 수익 증가 기회 · 포털 메인화면 노출 · 확산력 약화 · 이용자 증가에 따른 서버비용 등 부담	· 이용 편의성 저하 (로딩속도 저하, 언론사별 이용자인터페이스 차이, 과다한 광고 노출)
언론사 직접 기사 배열 조치	· 기사배열 책임부담 완화 · 기술적 조치 비용 발생	· 편집권 회복 · (예: Daum 노출 방식)포털 메인화면 노출 경쟁 심화, 대형 언론사 편중 구도 강화	· 뉴스 다양성 저하 위험 · 이념 · 성향 편중 위험
개인별 기사 배열 조치	· 독자 선택권 보장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신생 · 중소 언론 배제 위험	· 차단 기능으로 만족도 제고

- 아울러 개정안의 기사의 제공·매개 거부 규정과 관련하여, 유해 기사를 차단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하는 것은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사형 광고, 타 언론 무단 복제 기사, 악성 프로그램 유포 가능성이 있는 기사 등은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렵고, 사업자별

판단기준과 거부 조치는 언론에 대한 검열·심의 논란이 예상되며,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간 법적 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안 제10조제2항과 관련해 아웃링크는 느린 기사 로딩, 과도한 광고 등으로 사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선정적 제목이나 낚시성 기사 노출 등 어뷰징 유인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독자들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개별 언론사에 직접 접속하여 해당 언론사의 기사만을 보게 되므로 오히려 편향성이 심화될 수 있고, 개별 언론사마다 서비스 환경 차이로 인해 이용자의 뉴스 소비 감소나 언론사의 존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특정한 사업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하는 것은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기사 형식’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므로 ‘일방적으로 광고·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로 수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신문법 상 기사의 ‘제공’은 인링크, ‘매개’는 아웃링크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웃링크만 허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 기사 ‘제공’을 규정한 신문법

제2조제5항과 충돌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해외 뉴스 포털도 인링크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개정안 시행으로 한국은 인링크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예외적인 국가가 될 수 있으며, 현재 시행 중인 아웃링크 서비스도 화면 이동의 불편함과 과다 광고 노출 등의 문제가 이미 지적된바, 이는 이용자의 뉴스 소비 감소나 해외 플랫폼으로의 이동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경향신문은 아웃링크 제도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나,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와 언론사 간의 계약 문제를 법적으로 제제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으며, 아웃링크 제도 도입은 독자들의 불편함과 언론사 서버 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 필요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의 제공·매개를 거부할 권한을 주는 것은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뉴스 소비 경로의 일률적 제한은 뉴스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여 전체 뉴스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데 특히 포털 의존도가 높은 중소 언론사에 더 큰 타격을 주어 뉴스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대형사 중심의 구조를 강화하며, 뉴스 소비가 줄어든 자리를 유튜브, SNS 등이 채우며 검증되지 않은 허위정보 확산이 심화될 수 있으며, 독자

개인별 기사배열 기능은 표면적으로는 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치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포털이 특정 언론의 노출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화된 배열은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편향적 뉴스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

타 부처 및 협·단체 의견

□ 부처 의견

부처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법무부 (‘25.9.11.)	• (개정안 제9조의3) 해외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나, 지정의무자의 범위 등에 대한 보완 검토 필요 - 개정안은 유사 입법례*와 달리 국내에 사무소·영업소나 업무담당자가 없는 모든 해외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지정의무자의 범위 등에 대한 보완 검토 필요 - 유사 입법례는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만 국내대리인 지정의무를 부과 * 유사 입법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등

□ 협회, 민간업계 및 시민단체 의견

기관(단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 (‘25.9.15.)	• (개정안 제9조제1항·제6항)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조정 및 소송절차에서 문서송달 등을 원활하게 하고 해당 사업자의 기사 제공·매개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인터넷기업 협회 (‘25.9.15.)	• (개정안 제10조제2항) 아웃링크는 느린 기사 로딩, 과도한 광고 등으로 사용자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고, 선정적 제목이나 낚시성 기사 노출 등 어뷰징 유인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독자들이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개별 언론사에 직접 접속하여 해당 언론사의 기사만을 보게 되므로 오히려 편향성이 심화될 수 있으며, 개별 언론사마다 서비스 환경 차이로 인해 이용자의 뉴스 소비 감소나 언론사의 존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개정안 제10조제2항·제3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특정한 사업방식을 강제하는 것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며, 인터넷뉴스 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제공 또는 매개를 거부하는 것은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 • (개정안 제9조의3)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한미FTA의 현지주재의무 금지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음. 또한 현행 신문법 제13조제1항제1호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해당 요건이 완화되지 않는 이상 해외

기관(단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사업자가 인터넷뉴스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 (개정안 제9조제4항) 자료 제출 요구 관련 조항이 포괄위임금지 원칙,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 행정조사 남용금지의 원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음.
한국신문윤리위원회 (‘25.9.15.)	• (개정안 제10조제3항) ‘기사 형식’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므로 ‘일방적으로 광고·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기사’로 수정
한국언론진흥재단 (‘25.9.15.)	• (개정안 제10조제2항) 신문법 상 기사의 ‘제공’은 인링크, ‘매개’는 아웃링크로 해석할 수 있으며, 아웃링크만 허용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 기사 ‘제공’을 규정한 신문법 제2조제5항과 충돌 가능성이 있음. • (개정안 제10조제2항) 해외 뉴스 포털*도 인링크로 뉴스를 제공하고 있는바, 개정안 시행으로 한국은 인링크를 법률적으로 금지하는 예외적인 국가가 될 수 있음.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아웃링크 서비스**도 화면 이동의 불편함과 과다 광고 노출 등의 문제가 이미 지적된바, 이는 이용자의 뉴스 소비 감소나 해외 플랫폼으로의 이동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사례: 일본 Yahoo Japan, 미국 Yahoo, 대만 Yahoo, 체코 Seznam 등 ** 사례: 네이버 뉴스스탠드 • (개정안 제9조제6항) 해외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등록을 국내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의무조항보다는 ‘등록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유리함.
경향신문 (‘25.9.15.)	• (개정안 제9조제1항·제6항) 해외사업자에게도 국내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부과되는 공통된 의무를 적용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긍정적. 다만 여전히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에 대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 • (개정안 제10조제2항) 아웃링크 제도 도입의 취지는 공감하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와 언론사 간의 계약 문제를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부적절. 또한 아웃링크 제도 도입은 독자들의 불편함과 언론사 서버 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사전 준비 필요 • (개정안 제10조제3항)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기사의 제공·매개를 거부할 권한을 주는 것은 편집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옳지 않음.
한경닷컴 (‘25.9.15.)	• (개정안 제10조제2항) 현재 개정안은 언론이 직접 선정하고 배열한 기사를 제공·매개하는 기술적 조치만 준수사항으로 있고 그 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뉴스서비스*에 대한 준수사항이 없는바, 제4호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이 직접 선정하여 배열한 서비스 외에 별도의 뉴스 배열 서비스를

기관(단체)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운영할 경우, 편향적이지 않은 배열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추가 필요 * 사례: 네이버 마이뉴스, 섹션뉴스 등 • (개정안 제10조제3항) 제5호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뉴스서비스에 대한 알고리즘의 내부 기준' 추가 필요 • (개정안 제10조제4항) 보관 및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뉴스서비스에 적용된 알고리즘의 기준'도 추가 필요
한국인터넷 신문협회 (25.9.17.)	• (제안이유) 개정안은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 정보의 유포'를 막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 사실상 포털의 댓글 서비스를 원천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 참여 기회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조치임. • (개정안 제10조제2항제3호) 뉴스 소비 경로의 일률적 제한은 뉴스 소비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여 전체 뉴스 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특히 포털 의존도가 높은 중소 언론사에 더 큰 타격을 주어 뉴스 시장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대형사 중심의 구조를 강화하며, 뉴스 소비가 줄어든 자리를 유튜브, SNS 등이 채우며 검증되지 않은 허위정보 확산이 심화될 수 있음. • (개정안 제10조제2항제2호) 독자 개인별 기사배열 기능은 표면적으로는 독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치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포털이 특정 언론의 노출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배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개인화된 배열은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편향적 뉴스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적 부작용이 큼. • (개정안 제9조제6항) 해외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 및 등록을 의무화하더라도 글로벌 본사가 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실효적 제재 수단이 부족함. 국내 사업자만 과도한 규제 부담을 떠안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 제9조의4)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이는 자의적 법 집행으로 악용되어 언론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음. • (절차적 정당성) 개정안은 인터넷뉴스 시장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언론단체·포털·시민사회 등 주요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발의되었으므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함.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19234)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3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전기통신 사업법 (20677)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가 저하되는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되어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에 저해가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제10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중략) ~ 경우는 제외한다. 2의3.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2의4. 제22조의7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의무(이용자 피해 예방 노력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자 4의2.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678)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7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4의3. 제32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전파법 (20481)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485)	제31조(사후관리)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1.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2. 게임물의 사행행위예의 이용 방지 3. 게임물의 사행성 조장 방지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 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2.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3조(표시의무)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마다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게임물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표시의무 대상 게임물의 범위 및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